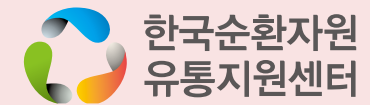


이 책자는 친환경 재사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상담센터
1522-0082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빈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CONTENTS

01 공통사항

- 02 보증금은 언제 인상되나?
- 03 '17.1.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03 신병과 구병은 어떻게 구분하나?
- 04 보증금이 인상되면 취급수수료도 함께 인상되나?
- 05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은?
- 06 빈용기보증금 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 07 박스에 담기지 않은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
- 08 신고보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은?

09 생산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0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재사용 표시는?
- 11 보증금이 인상되면 바코드도 변경하는지?
- 12 신병의 바코드 조정 내역은?
- 13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신구병 구분은?
- 14 반환되는 모든 빈용기를 조사하는지?
- 15 유희용 신구병 확인 방법은?
- 16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자 준비 사항은?

17 도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8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신구병 구분방법은?
- 19 보증금이 인상되면 반환내역서 작성방법은?
- 20 보증금 인상으로 도매업계에서 준비할 사항은?
- 21 유희용 신구병 확인방법은?
- 22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빈용기 회수내역 입력방법은?
- 23 소매점 취급수수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 24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를 공병상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 24 가정용을 회수했을 때 입력방법은?
- 25 가정용의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 방법은?
- 25 소비자가 직접 도매점에 반환 시 취급 수수료는?
- 26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27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 28 신구병 구분방법은?
- 29 판매금액이 인상되나?
- 29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이 확인 곤란할 경우에는?
- 30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소매업자 준비사항은?
- 30 다량의 빈용기 반환 요구에는 어떻게 응대하는지?
- 31 깨지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 31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 32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액의 확인은?
- 32 보증금 대신 물건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 33 빈용기 반환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지?
- 33 유희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에는?
- 34 대형할인매장 구입 제품의 보증금 반환은?
- 35 맥주는 페트, 소주는 'C' 브랜드만 취급할 경우에는?
- 36 도매점에서의 빈용기 반환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37 참고자료

- 38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41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빈용기
보증금
제도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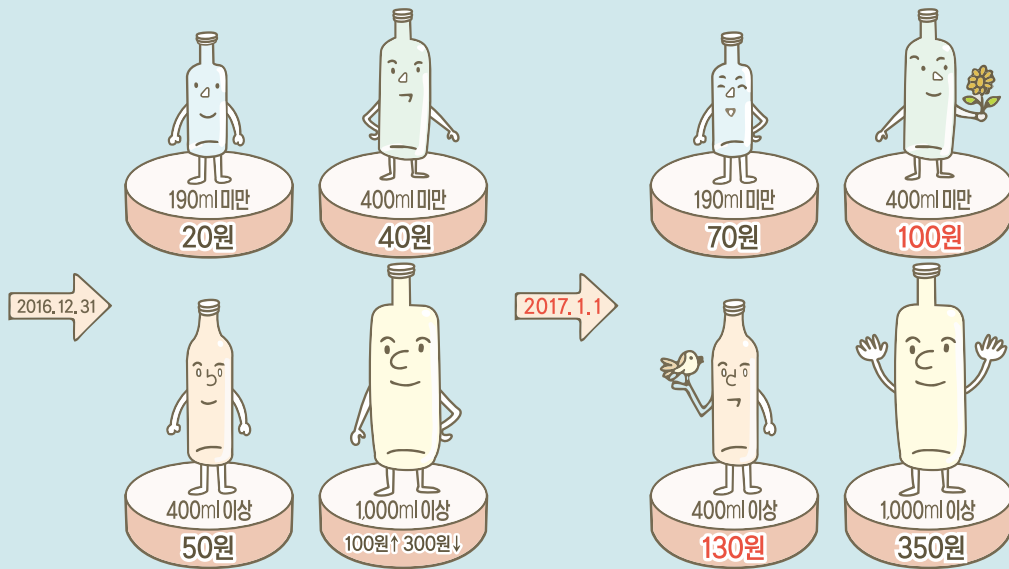
공통사항

상담센터
1522-0082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빈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빈용기보증금(이하 '보증금')은 언제 인상되나?



A —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됨

대상품목	규격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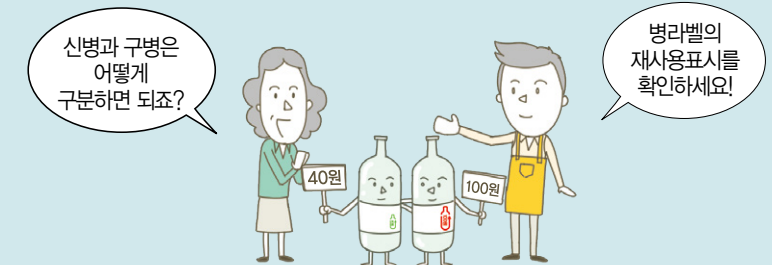
Q2

'17.1.1일부터 무조건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A**
- 보증금 포함 제품의 상표 등의 재사용표시에 기재된 보증금을 확인하시고 지불하면 됨 (인상된 제품은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일정 기간 소요)
 -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보증금 인상 이전의 용기(구병)와 인상된 용기(신병)가 함께 유통될 수 있으며,
 - 이는 보증금이 인상되기 이전(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에서는 재사용표시를 확인하고 판매 및 구입하여야 함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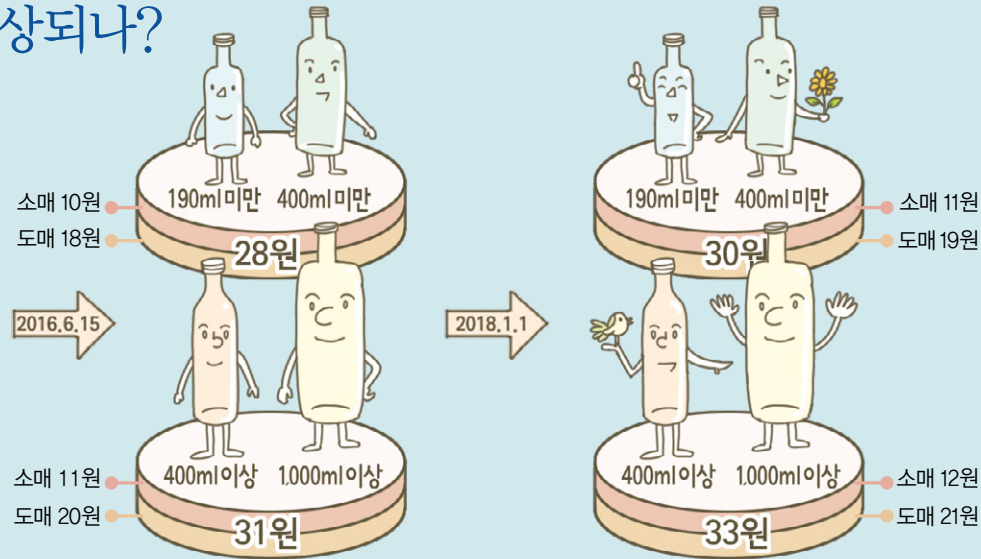
신병과 구병은 어떻게 구분하나?



- A**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재사용 표시를 통해 확인하면 됨
 -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용기에 부착된 라벨 등이 변경되며,
 - 생산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사용 표시확대·목라벨 및 색상이 변경되고, 새로운 바코드를 통한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환불받는 단계부터 최종 제조사 반납단계까지 육안·기계 등으로 확인 가능함
 - 다만,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병 보증금을 지급하게 됨 (영수증 등 증빙 시 신병비용 지급)
 - 제품 소비 후 장기간 방치 시 라벨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계부터 신속히 환불 받는 것이 중요함
- ※ 라벨·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Q4

보증금이 인상되면
취급수수료도
함께 인상되나?



A

■ 취급수수료는 보증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음

- 2016년 6월 2일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대표와 유통업계 대표의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터 기존보다 병당 12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오비맥주의 경우 400ml 이상의 주류가격 인상(2016.11.1)에 따라
 - 400ml 이상 제품에 한해 도매업자 취급수수료 1원을 인상하였고,
 - 2018. 1. 1.부터는 도소매 1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임

규격	현행	2016.6.15.일부터 적용			2018.1.1.일부터 적용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190ml 미만	8원	28원	18원	10원	30원	19원	11원
400ml 미만	16원						
400ml 이상	19원	31원	20원	11원	33원	21원	12원
1,000ml 이상	23원						

〈출처〉 비용기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취급수수료 합의서('16.6.2)

Q5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A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함.
-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2016. 7. 1.부터는 비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

- 보증금 환불거부 등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 비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용기보증금 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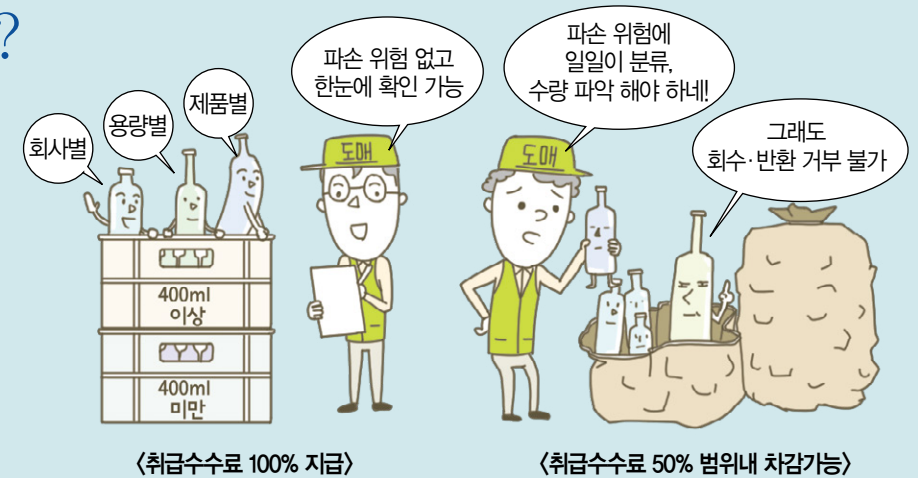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6호의2	50	150	300

Q6

플라스틱 박스에 담기지 않은 비용기의 반환 거부?



A

- 플라스틱 박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및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음
 -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플라스틱 박스에 운반 및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 회수 및 반환하고자 하는 비용기가 종이박스, 마대 등에 담겨져있다는 이유로 반환이나 회수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비용기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비용기 종류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비용기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반환하여야 함
 - 특히, 취급수수료 합의문(16. 6. 2.)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매업자가 비용기를 마대자루 등에 보관하여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차감 가능
 - 이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생산자에게 반환할 때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에 선별 등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 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도·소매업자는 보증금 포함 제품은 플라스틱 박스로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반환한 비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자가 플라스틱 박스 주문을 기피하거나 플라스틱 박스 제공 등 문의사항은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처리절차

구분	주요내용	주체
지침 시행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환경부
신고접수증 제출	신고접수증 주무관청 또는 신고센터* 제출 * 신고센터 접수 시 주무관청에 이첩	신고자 → 지자체 또는 신고센터
검토 및 통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항 확인 및 검토결과 통보	지자체 → 신고자
과태료 확정 결과 통보	과태료 확정 결과 해당 소매업자 통보	지자체 →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과태료 처분 확정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지자체 → 신고자

— (지급기준)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 (보상금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 (보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실시

출처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 2. 24.)

비용기
보증금
제도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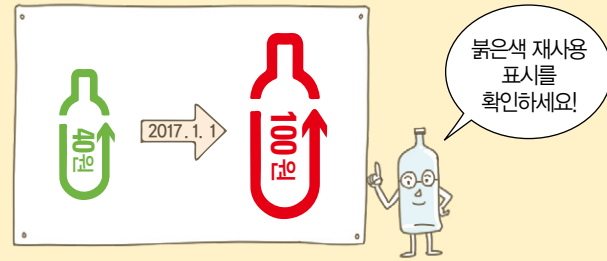
생산자

상담센터
1522-0082

-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비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재사용 표시는 어떻게 되나?



A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2조에 따라
 -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 1. 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되는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재사용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 ※ 생산자 여건에 따라 2016.12.31. 이전 생산된 제품에 인상된 보증금을 부착하고 2017.1.1. 출고하는 경우도 가능
- 소비자 인식, 도소매업자의 선별 용이성 등을 감안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음
 -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을 부착하거나,
 - 보증금 인상 이후 약 6개월 동안 기존 재사용표시보다 약 150% 이상 확대, 색상은 붉은색으로 변경 필요
 - 다만, 상표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 바탕색이 적색·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가능함
 -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 빈용기 몸체(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100원)을 표시하여야 함

소주(400ml 미만)		맥주(400ml 이상)	
〈종전〉	〈변경〉	〈종전〉	〈변경〉

• 아울러, 가능한 인상된 보증금 표시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병목 라벨도 적극 활용 필요

Q2

보증금이 인상되면 바코드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A

- 소매점에서 판매·회수과정에서 자동화기기 사용을 위해
 - 재사용표시와 함께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 1. 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되는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함
- 고시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 보증금 인상에 따른 새로운 바코드는 각 유형별 기준(공칭 치수)에서 최소 80%~최대 200%로 표시하여야 하나,
 - 국제기준, 국내외 사례 및 자동화기기의 인식 용이성, 생산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 바코드의 바 높이 및 가드바 높이를 애초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
 - 다만, 너비, 왼쪽 및 오른쪽 여백은 고시 기준에 따라야 함(80% 이상)

〈EAN-13 바코드 예시 및 조정에〉



mm	너비	바 높이	가드바 높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공칭치수	37.29	22.85	24.5	3.63	2.31
최소값(80%)	29.83	18.28	19.60	2.90	1.85
조정안	29.83	11.43	12.25	2.90	1.85

※ EAN-8, UPC-A, UPC-E도 동일하게 바높이와 가드바 높이만 50%로 조정

바코드 조정 내역

(mm)

구분	EAN-8			EAN-8			UPC-A			UPC-E		
	공칭 치수	최소값		공칭 치수	최소값		공칭 치수	최소값		공칭 치수	최소값	
		당초	조정		당초	조정		당초	조정		당초	조정
너비	37.29	29.83	좌동	26.73	21.38	좌동	37.29	29.83	좌동	22.11	17.69	좌동
바 높이	22.85	18.28	11.43	18.23	14.58	9.12	22.85	18.28	11.43	22.85	18.28	11.43
가드바 높이	24.5	19.60	12.25	19.88	15.90	9.94	24.5	19.60	12.25	24.5	19.60	12.25
왼쪽 여백	3.63	2.90	좌동	2.31	1.85	좌동	2.97	2.38	좌동	2.97	2.38	좌동
오른쪽 여백	2.31	1.85	좌동	2.31	1.85	좌동	2.97	2.38	좌동	2.31	1.85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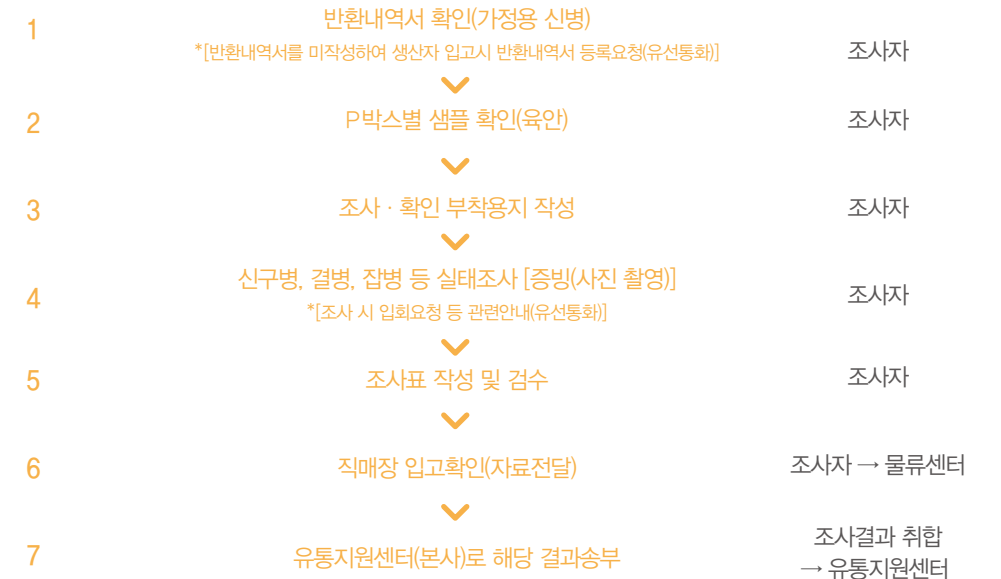
Q3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신구병 구분은 어떻게 되나?

A

- 생산자는 비용기 반환내역서의 신병에 해당하는 비용기의 적정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비용기를 반환하는 자가 보증금 인상 이전의 빈병(이하 '구병')과 인상 이후 빈병(이하 '신병')으로 선별하고,
 - 지금관리시스템에 신병과 구병으로 구분된 반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 반환으로 인정하면 됨
 - ※ 선별 및 보증금 확인 등은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사항' 및 '지침 제6조 주체별 역할분담'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 비용기를 반환하는 자가 신병으로 반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유통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직매장에 인력을 상주시켜 반환되는 신병의 적정 분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최종 확인된 내역은 지금관리시스템의 생산자가 작성하는 입고 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유통센터 신구병 확인조사 절차〉



Q4

모든 비용기 반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A

- 음식점 등 유흥용을 제외한 소매점 등으로 유통되는 가정용은 반환하는 자가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야 함(Q&A II-3 참조)
- 반환되는 가정용 비용기 중 신병으로 구분된 물량에 대하여 반환 내역서와 실제 물량 등을 확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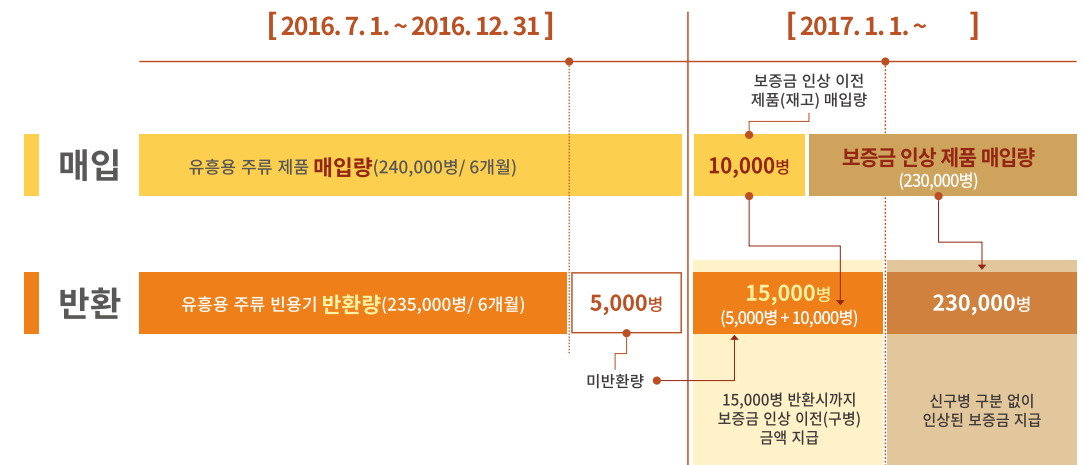
Q5

유흥용은 어떤 방법으로
신구병을 확인하나?

A

- 지급관리지침 제35조제5항(신설)에 따라
 - 도매업자가 식당 등에 판매 후 직접 회수하는 유흥음식점용 비용기는 신구병 선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개별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매입)된 물량에 해당하는 비용기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신구병 구분 없이 구병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 개별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매입)된 물량만큼 비용기를 모두 회수한 다음부터는 해당 업체의 회수량 전체에 신병 보증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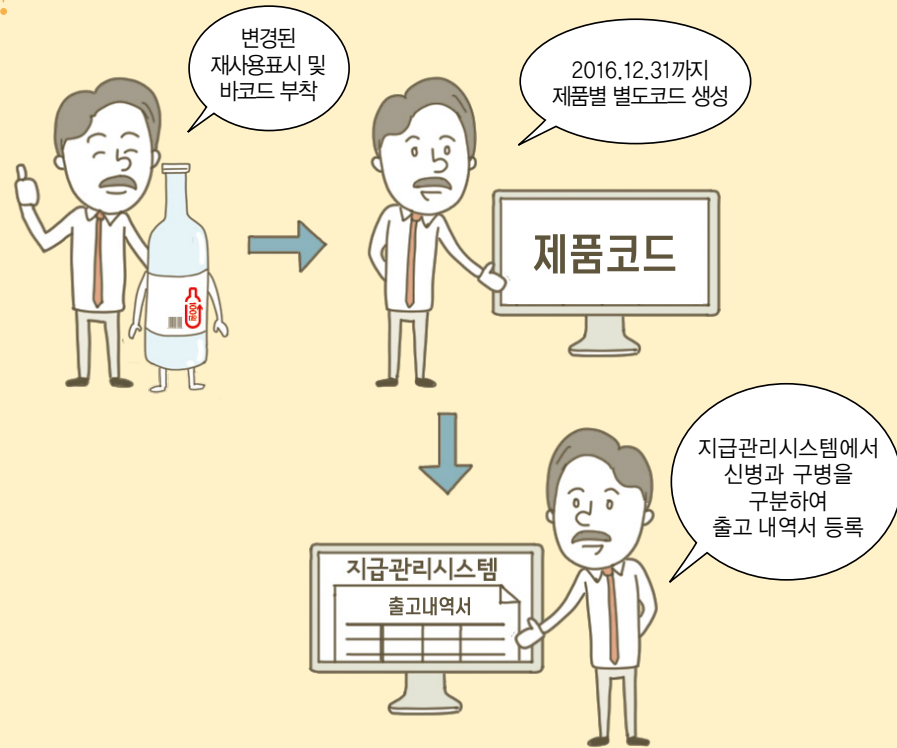
유흥용 주류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고물량 관리 예시



- 이는 유흥용의 경우에는 출고된 물량의 거의 전부가 회수되는 특성을 감안하였으며,
 - 가정용은 회수경로가 다양하여 유흥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신구병 분류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함
 - ※ 신병으로 분류하여 입고시킨 물량만 확인
 - ※ 유흥용도 신구병 선별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가정용과 동일하게 신구병 분류 및 확인절차를 거쳐 입고 가능

Q6

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생산자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관리 등을 위해 생산자는

- ①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되는 제품의 라벨에 변경된 재사용표시 및 바코드 부착 (Q&A II-1, II-2 참조)
- ② 생산자 및 유통업체는 2016.12.31.까지 각 사의 내부시스템에 신병에 대하여 제품별 별도 코드 생성
- ③ 생산자는 지급관리시스템에서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출고 내역서 등록

보증금 인상 이후 비용기가 반환되면

- 신구병으로 구분된 반환내역서와 신병으로 반환되는 비용기의 적정 여부를 확인 (현장 담당자 사전 교육 등 필요, 유통지원센터 검수인력 배치, 조사지원 예정)
- 확인된 내용은 지급관리시스템의 입고내역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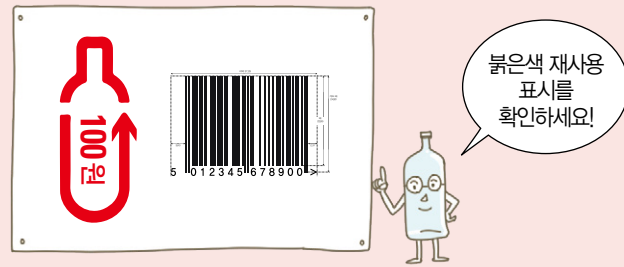
비용기
보증금
제도
Q & A
도매점

상담센터
1522-0082

-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비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신구병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 보증금 포함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재사용표시와 바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됨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2조에 따라
 -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 1. 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되는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재사용 표시가 부착됨
 - ※ 생산자 여건에 따라 2016.12.31. 이전 생산된 제품에 인상된 보증금을 부착하고 2017.1.1. 출고하는 경우도 가능
- 신구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재사용표시는 보증금 인상 이후 약 6개월 동안 종전보다 약 150% 이상 확대되며, 색상은 붉은색으로 변경됨
 - ※ 일부 생산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바탕색이 적색·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 만약, 보증금액이 표기된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 반환으로 인정하게 됨
 - 다만,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몸체 또는 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을 표시하게 됨

소주(400ml 미만)		맥주(400ml 이상)	
〈종전〉	〈변경〉	〈종전〉	〈변경〉

※ 생산자 제품별 상표 색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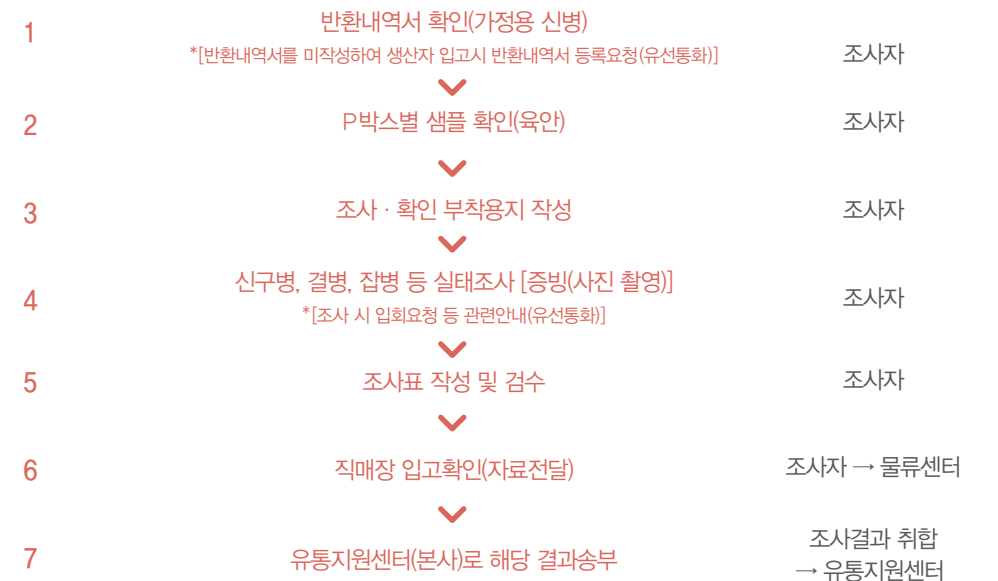
Q2

보증금이 인상되면 반환내역서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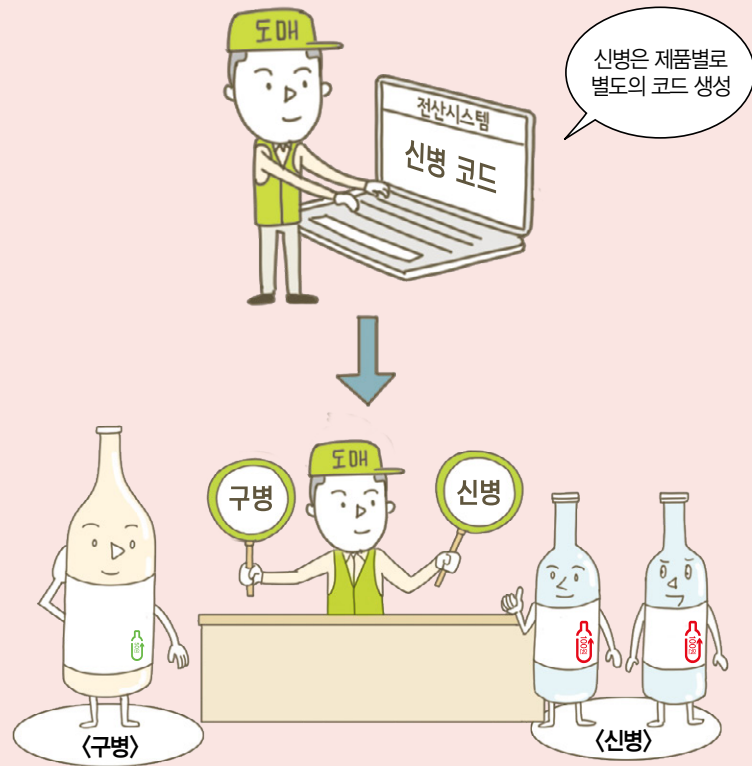
- 지급관리시스템의 반환내역서에는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 직매장에서 신속한 빈용기 반환을 위해 차량에 적재할 때부터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야 함
 - 만약,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거나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 반환으로 인정하게 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준수사항 및 지급관리지침 제6조 등에 따라
 -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는 보증금 인상 이전의 빈병(이하 '구병')과 인상 이후 빈병(이하 '신병')으로 구분하고
 - 신병과 구병으로 회수한 빈용기 수량 등을 지급관리시스템의 반환내역서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 실제 반환하는 빈용기는 차량에 적재할 때 신병과 구병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빈용기가 반환되면 현장에서 반환되는 신병 물량에 대하여 적정 반환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게 됨
 - ※ 유통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직매장에 인력을 상주시켜 반환되는 신병의 적정 분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모든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최종 확인된 내역을 생산자가 지급 관리시스템의 입고내역서에 이를 반영하게 됨

〈유통센터 신구병 확인조사 절차〉



Q3

보증금 인상으로 도매업계에서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



A

-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관리 등을 위해 도매업계에서는
 - ① 보증금이 인상되면 제품 라벨에 변경된 바코드가 부착(Q&A II-1, II-2 참조)되므로 2016.12.31.까지 각 회사의 내부시스템에 신병에 대하여 제품별로 별도 코드를 생성하여야 하고
 - ② 내부시스템(ERP 등) 및 실물관리(實物管理)에서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이는 보증금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신병과 구병이 유통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 특히, 신병과 구병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관리되는 유통용 재고 물량 관리 등을 위해서는 사전 조치가 꼭 필요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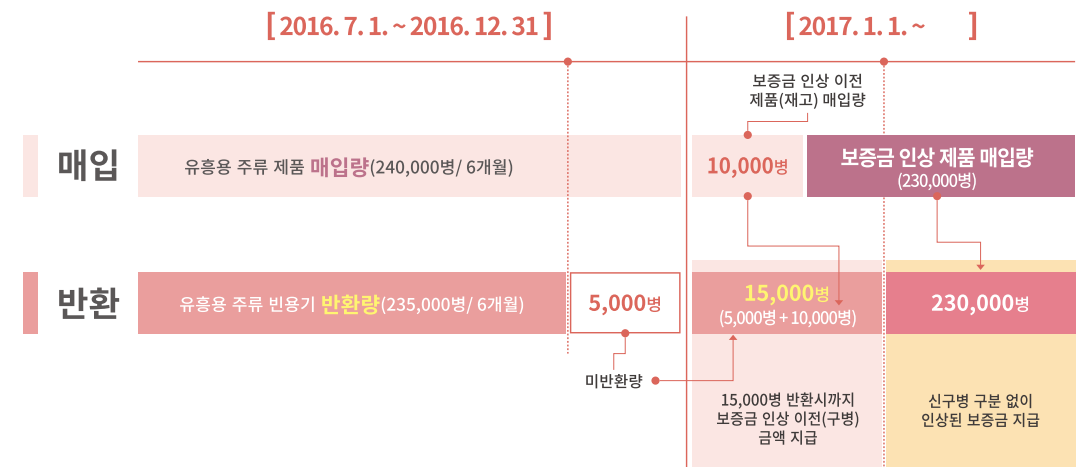
Q4

유통용은 어떤 방법으로 신구병을 확인하나?

A

- 지급관리지침 제35조 제5항에 따라
 - 도매업자가 식당 등에 판매 후 직접 회수하는 유통음식점용 비용기는 신구병 선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개별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매입)된 물량에 해당하는 비용기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신구병 구분 없이 구병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 개별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매입)된 물량만큼 비용기를 모두 회수한 다음부터는 해당 업체의 회수량 전체에 신병 보증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됨
- 이는 유통용의 경우에는 출고된 물량의 거의 전부가 회수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며,
 - 가정용은 회수경로가 다양하여 유통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신구병 분류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함

유통용 주류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고물량 관리 예시



※ 유통용도 신구병 선별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가정용과 동일하게 신구병 분류 및 확인절차를 거쳐 입고 가능

Q5

가정용(대형매장용 포함)과 비용기 회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나?



A

- 소매점을 통해 회수한 비용기는 소매점별 회수내역을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취급수수료는 제품의 공급 및 비용기 회수 경로에 따라 상이함
 - 이번 취급수수료 합의('16. 6. 2.)에 따라 도매점과 소매점에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매점을 거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취급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매점별 회수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소매점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을 지급받지만,
 - 소매점을 거쳐 회수한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모두를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아 해당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법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관련 정보 확인 등이 필요함
- 이와 달리, 유흥음식점용은 소매점을 거치지 않으므로
 - 도매점에서 거래처별 회수정보 입력 대신 전체 회수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실태조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별 비용기 회수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함

Q6

소매점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A

-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됨
- 도매점이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일괄 수령한 경우,
 - 도매점이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비용기 수량에 맞게 소매점에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 이를 지급하지 않은 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 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6호	50	100	300

Q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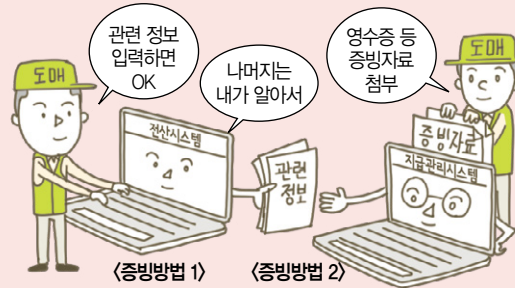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는?



- A**
- 재활용법에서는 도매업자가 사적계약(私的契約)에 의한 빈용기 수거와 운반 등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재활용법 및 지급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해당 도매업자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소매점별 회수정보, 음식점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는 총량 등의 회수 및 반환정보 등을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 생산자의 입고 확인 후 지급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을 도매점이 별도로 공병상과 정산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

Q8

가정용을 회수했을 때 이를 입력하는 방법은?



- A**
- 도매점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거나 직접 입력 하면 됨
 - 도매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 도매업자 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 입력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전산망을 통해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빈용기 회수량 등과 관련된 정보 외 소매점별 판매량 등은 전송되지 않음
 -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전송이 곤란한 경우, 영수증 등 소매점의 취급수수료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하면 됨
 - 소매점을 통한 회수·반환 여부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매점별 회수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Q9

가정용에 대한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방법은?



- A**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실제내역 증빙 가능
 - 재활용법에 따라 빈용기 회수촉진 등을 위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 유통지원센터는 이를 확인한 후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10

소비자가 직접 도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한 경우 취급수수료는?



- A**
- 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만 지급됨
 - 지난 6.2.자로 합의문 제1조제2항에 따라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빈용기를 회수한 경우,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11

유통음식점 및 소매점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A

- 유통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는 비용기 증가는 관계없음
 - 다만, 도매점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비해 유통음식점 회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 ※ 수수료 차액을 노리는 부당이득 사례 발생 방지
- 소매점을 통해 회수되는 비용기 수량이 출고량 보다 증가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비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구입 후 지역 이동 등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비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수량(출고량)보다 회수량이 많을 수 있으나,
 - 도매업자는 반드시 소매업자별 비용기 회수내역 등의 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도매업자가 소매점별 회수내역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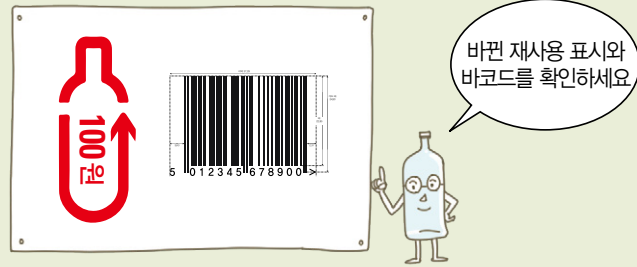
비용기 보증금 제도 Q & A 소매점

상담센터
1522-0082

-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비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신구병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A

- 보증금 포함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재사용표시와 바코드 등을 통해 신구병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 및 보증금을 환불해 주실 때에는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재사용표시, 일부 제품에 부착되는 목라벨과 바코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품 판매 및 보증금을 환불해 주셔야 함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2조에 따라
 -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 1. 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되는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재사용표시 등이 부착됨
 - 만약, 보증금액이 표기된 재사용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반환으로 인정하게 됨
- 신구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시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목라벨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재사용표시는 보증금 인상 이후 약 6개월 동안 종전보다 약 150% 이상 확대되며, 색상은 붉은색으로 변경됨
 - 일부 생산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채도 등 조정 가능하며, 바탕색이 적색·흑색 등인 이유로 적색으로 재사용 표시를 함에 따라 가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흰색 등으로 표시
 - 다만,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몸체 또는 병목에 인쇄된 보증금 금액을 표시하게 됨

소주(400ml 미만)		맥주(400ml 이상)	
〈종전〉	〈변경〉	〈종전〉	〈변경〉

※ 생산자 제품별 상표 색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2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점 판매금액이 인상되는가?



A

- 보증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품가격과는 별개임
 - 보증금은 제품가격에 포함되는 별도의 금액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 소비 후, 소매점에 반환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임
- 다만, 제품 구입 당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체감할 수는 있음
 - 가급적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매점에서는
 - ① 제품판매대에 보증금과 제품가격을 분리 표시하는 한편,
 - ② 제품 가격 결제내역인 영수증에도 보증금과 제품가격을 분리 표시 필요

Q3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빈용기의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액 등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 전 금액으로 지급하면 됨
 -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근거법령〉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빈용기 반환 원칙)
 ②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변경 전과 후의 빈용기를 구분하여 회수 및 반환하여야 하며, 도매업자와 생산자는 회수 및 반환되는 빈용기가 변경 전과 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로써 보증금 표시부분이 훼손되어 해당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4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업자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

A

-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관리 등을 위해 소매업계에서는
 - ① 보증금이 인상되면 제품 라벨에 변경된 바코드가 부착(Q&A II-1, II-2 참조)되므로 2016.12.31.까지 각 社의 내부시스템(POS 등)에 신병에 대하여 제품별로 변경된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 ② 제품판매대와 영수증 등에 보증금과 제품가격이 분리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또한, 내부시스템(POS, ERP 등) 및 실물관리(實物管理)에서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이는 보증금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신병과 구병이 유통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5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A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Q6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A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위생에 영향을 미침

Q7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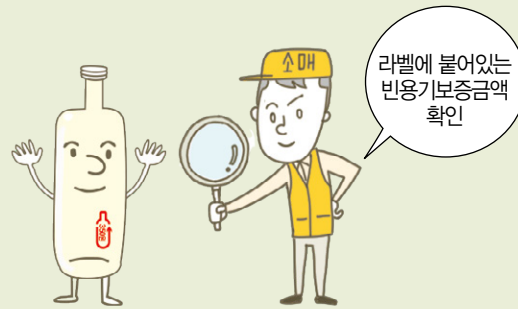


A

-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 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8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빈용기보증금액의 확인은?



A

- 유리병 제품 뒷면 또는 앞면 등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면 됨
 -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등), 맥주병(330ml, 500ml, 640ml 등),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임. 다만, 340ml 등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
- 2016. 7. 1.부터는 재사용표시가 변경되어 손쉽게 확인 가능함

Q9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A

-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Q10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A

-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11

유흥음식점용 빈용기에 대해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A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보증금 포함제품의 경우에는
 - 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가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하므로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Q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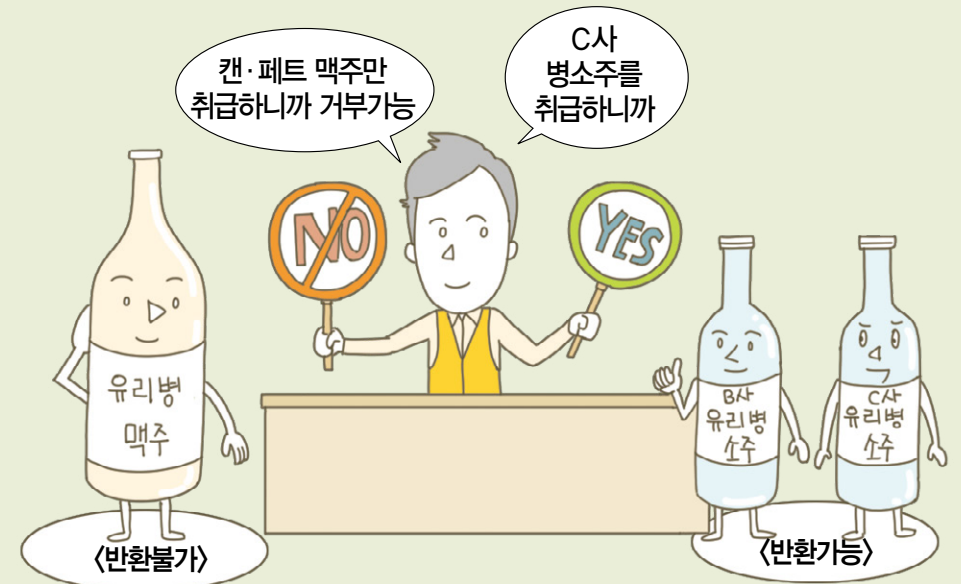
대형할인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빈용기의 보증금 반환 요구?



- A**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따라 판매 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Q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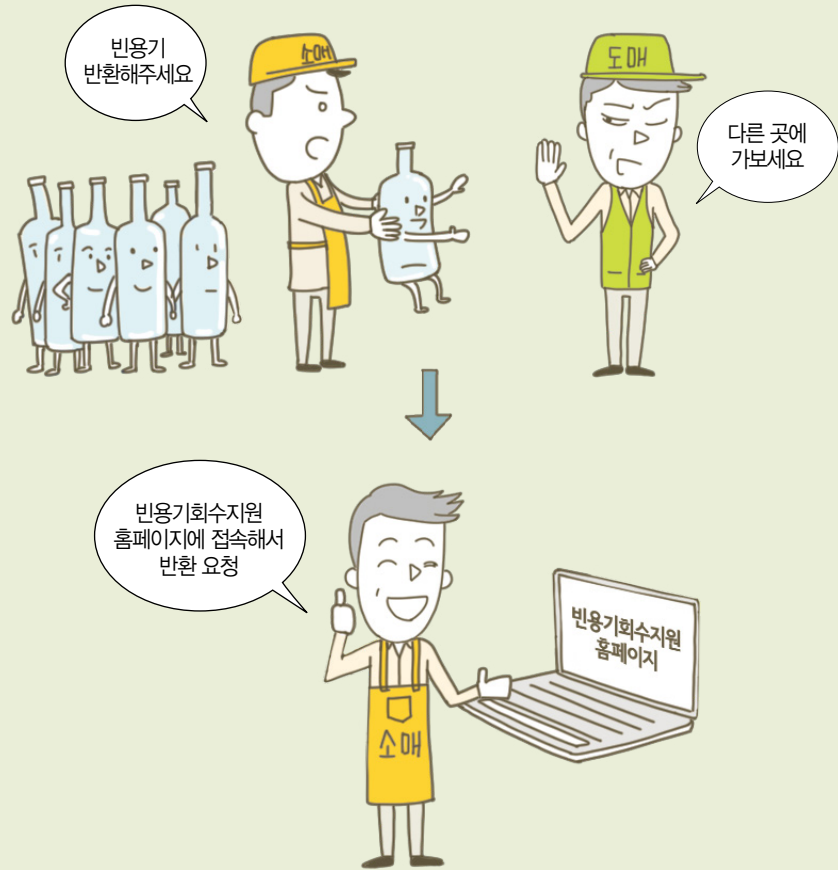
맥주는 페트만 취급하고, 소주는 'C'브랜드 제품만 취급할 경우?



- A**
-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하지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 소주의 경우 'C' 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주어야 함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란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을 말하며,
 - 이에 따라, 현재 출시된 제품현황 기준에 따른 소매점별 회수하여야 하는 '같은 종류'의 판단 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Q14

도매점에서의 비용기 반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A

- 제품을 구매한 도매점에는 비용기 회수 요청 시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만약 거래 중인 도매점을 통한 비용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 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비용기회수지원 홈페이지(<http://reusebottle.kr>)에 접속한 다음 비용기회수처를 클릭하여 인근 도매점 또는 제조사를 확인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 유통지원센터 회수개선팀(02-768-1653)으로 문의하시면, 인근 도매점 또는 제조사로의 연계반환 및 유통지원센터에서 직접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비용기
보증금
제도
참고자료

상담센터
1522-0082

-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비용기보증금상담 센터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1. 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준수사항

- 가. 지역별로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비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것
- 나.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유통지원센터에 납부할 것
- 다.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라. 다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제품의 비용기가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비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돌려줄 것. 다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한 자가 표준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 마. 소비자의 비용기 반환 및 비용기보증금 환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바. 비용기의 분류 및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및 비용기 회수를 늘릴 것
- 사.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 중인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비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할 것
- 나. 회수된 비용기에 대하여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비용기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전액 소매업자에 지급할 것
- 다.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비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할 것

- 라. 회수된 비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비용기재사용 생산자에게 반환할 것
- 마. 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플라스틱 박스 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할 것
- 바.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비용기보증금포함 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사. 반환되는 비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3.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판매 중인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비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2) 비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나. 소비자가 쉽게 비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할 것
- 라. 회수된 비용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기를 도매업자 및 비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 시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할 것

- 마.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의 가격과 비용기보증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바. 유통지원센터가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사. 반환되는 비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4. 유통지원센터의 준수사항

-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비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 나. 제1호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비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비용기 반환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
- 다. 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비용기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것
- 라. 비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것
- 마. 라목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참고자료

비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2016.12.15 부터 시행)

신 설 조 항

— 제 7장 보칙 中 제35조(지급관리 적용 특례)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생산자 등은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금 변경 전 비용기(이하 '구병'이라 한다.)와 변경 후 비용기(이하 '신병'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용기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비용기를 반환받는 자(유통지원센터 포함)는 제1호에 따라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라벨 훼손 등으로 신병과 구병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한다.
 3. 반환되는 비용기에 대한 신병과 구병의 혼입조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병으로 구분하여 반환하려는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결과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입고내역서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비용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병과 구병의 구분 없이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된 비용기가 전량 회수될 때까지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병으로 출고된 비용기가 전량 회수된 이후에는 신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